

부·청 공동 추진 사업의 AX기반농작업협업산업기술개발(농식품부)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지능형농작업로봇핵심기술개발(농촌진흥청)은  
별첨 2를 참고하여 지원 바랍니다.

## [별첨 1] 2026년도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 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세부 추진내용

1

### 농식품부 과제 공고 개요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4,650백만 원 이내, 6개 과제

(단위 : 개, 백만원)

내역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이내)	
		과제 수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지정공모	6	4,650
합 계		6	4,650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2

### 지원 대상

지정공모과제 : 6개 과제

(단위 : 백만 원)

내역사업	협업 구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이내)	
				'26년	총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협업- 지능형01	무인·자율 트랙터 간 다중 협동형 제어 기술개발	3년 9개월	700	3,499
	협업- 지능형01	트랙터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AI기술 개발	3년 9개월	750	3,750
	협업- 지능형02	밭농업 전주기 개방형 로봇 플랫폼 및 농작업 서비스 기술개발	4년 9개월	1,100	6,968
	협업- 지능형03	협업 작업용 무인 제초 로봇 및 정밀 제초 기술 개발	3년 9개월	750	3,750
	협업- 지능형04	과수 생산 안정화를 위한 재배관리 로봇 플랫폼 및 지능화 기술 개발	4년 9개월	700	4,432
	협업- 지능형05	지능형 이종 로봇 기반 노지 현장 물류 협업 기술 개발	3년 9개월	650	3,251
합 계				4,650	25,650

### 3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협업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책임자는 협업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 형태(주관·공동·위탁)와 무관하게 1개 과제에만 지원 가능 (협업과제에서 부·청 개별 과제에 동시 지원불가)

※ (예시) 협업과제가 농식품부 2개, 농진청 2개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4개의 과제 중 1개의 과제에만 지원 가능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 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4

## 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농촌진흥청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사업은 농진청 공고를 통해서 접수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 절차】**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지정 완료 권장

### □ 유의사항

- 협업과제에 지원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은 협업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까지 접수 정보 입력과 함께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본 공고문 참조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 주의 사항 >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 ◆ 제출서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 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6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포함)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금이 7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관(기업)부담금은 25백만원 이상이고 현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25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times 100\% = 25\%$ )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중복지원 방지

- 타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작성 서식은 별임3 연구개발 계획서 내 서식 참조, 평가 시 차별성 검토 예정)

## 5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 협업과제 시행계획 통합공고문 참조

단계 협약

총 연구기간	1단계	2단계
4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3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주요 평가지표

구분	주요 평가 내용	관련 규정
지정공모 과제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 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 8호, 제9호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적용은 주관기관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기술료의 경우 농기평으로 공문으로 보고 및 IRIS에 등록된 성과만 인정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함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

## 6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 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기술료 등 징수기준

###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①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구비 점검 강화 안내

- 연구비 교육은 기관별 단계 내 1회 이상 의무화로 단계평가에 반영되며, 연구비 상시점검 보완 미흡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함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융복합사업실	061-338-9752
▪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	법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붙임 1>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참고 1) NRI 연구자 전환 매뉴얼**

##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 종합의견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

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평가 종합의견

- 과제선정시 수정·보완사항, 과제선정 제외시 사유 등

##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

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1. 종합평가(점수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점수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1) 연구목표의 정량성 및 명확성 ·양적, 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0 1 2 3 4 5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총실성·체계성·창의성	0 1 2 3 4 5
기술개발 수행능력	3)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총실도 (선행연구결과 확보,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정도)	0 1 2 3 4 5
	4) 연구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0 1 2 3 4 5
	5)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0 2 4 6 8 10
기술개발 추진전략	6)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적정성, 합리성	0 1 2 3 4 5
	7)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0 1 2 3 4 5
	8)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0 1 2 3 4 5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9) 실용화·산업화 전략의 구체성	0 5 10 15 20 25
	10)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기술의 혁신성 ·경제·사회·지역적 파급효과 ·기업의 재무안정성 등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	0 5 10 15 20 25
	11) 사업 및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점

## 2. 과제선정시 수정·보완사항 등 의견

### 2-1. 보완사항

### 2-2. 연구성과목표 가중치의 적정성 검토의견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성과 활용 흥보	정책 활용	정책 활용	정책 활용		
	특허 출원	특허 등록	품종 등록	SMART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 창출		논문	논문 평균 IF	학술 발표						
	SCI	비SCI	SCIE	SCOPUS	건수	건	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건	건	건	건	건	건	건			
단위	건	건	건	평균등급	건	백만원	건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신청내용																				
적정수준																				

\*사업화지표에 60% 이상 배분하되 '논문평균IF'지표는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에 한해 가중치 설정

## 3. 과제선정 제외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 4. 유사·중복 조정의견

## 5.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 적정성 검토의견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적정수준 검토	천원	천원	년
의견			

## 6. 보안등급 분류

### 6-1. 보안등급 분류

연구책임자 신청 시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보안과제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제
--------------------	--	--------------------	---

### 6-2. 보안등급 검토의견